

현행 수입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현황과 대책



신 광 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우리나라가 국내소비용 축산물을 처음 수입한 것은 1976년에 호주산 쇠소기를 수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국의 진료에 의하면 <표1>과 같이 본격적으로 수입물량이 늘기 시작한 것은 1978년에 5만3천77톤, 1979년에 3만9천42톤, 그리고 1981년 2만4천7백16톤, 1982년에 4만1천5백8톤, 1983년에 5만1백92톤, 1984년에 2만3천9백95톤의 쇠고기를 수입한바 있다. 그 후 소값파동으로 3년간 쇠고기수입이 중단되었다가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국내 수급조절 명목으로 작년(1988년) 후반기부터 다시 수입이 재개되어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 약 5만톤의 쇠고기가 수입되었다고 하며, 이 물량은 우리나라 연간 쇠고기 소비량의 약 1/3을 점하는 비율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근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미국산 자몽과 사과쥬스 등 농산물의 알라(일반명 다미노자이드)농약의 검출과문 등 농약잔류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산 옥수수의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검출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한, EC(구주공동체)국가에서 취한바 있는 성장홀몬문제 사용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움직임 등 수입농축산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축산물 검사제도의 현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때가 왔으며,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1. 수입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수입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규제 내용과 검사기관의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축산물의 경우 농림수산부 산하의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축산물 검역관리의 일환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반면, 축산물도 식품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사회부장관의 식품위생관리 차원에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표1〉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과 수입상황

(단위 : M/T)

구분	연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총 소비량	75,533	81,624	114,731	113,827	99,974	93,202	106,506	
수입량	700	6,366	44,435	31,747	—	24,716	41,508	
(수입비율)	(0.9)	(7.8)	(38.7)	(27.9)	—	(26.5)	(39.0)	

구분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소비량	115,497	106,581	120,342	147,934	151,926	141,536	150,000	
수입량	50,192	23,995	—	—	—	14,193	60,000	
(수입비율)	(43.5)	(22.5)	—	—	—	(10.0)	(40.0)	

* 자료 : 농림수산부 자료에 의한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표(축협중앙회 조사자료)

* 주 : 88년은 잠정치이며, 89년은 측정치임.

양면성을 갖고 있는것이 현 실정으로서, 양부처간의 소관사항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현황을 소개 하고자 한다.

(1) 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1) 농림수산부 소관

현재 농림수산부의 수입축산물 위생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규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처리법을 들 수 있다. 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관계조항을 보면, 동법 제31조(불합격품 등의 처분)를 비롯하여 동법 제21조(수입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지점검역물과 수입금지지역), 동법 제22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동법 제23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동법 제24조(수입검역) 등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처리법상의 관계조항은 동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검사기준 등)에 의한 별표나(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규들중 가축전염예병예방법은 명칭 그대로 국내 및 외국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축산물위생처리법은 국내산 수축의 도살, 해체 및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과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각각 그 법규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들 만으로는 수입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규제로서 또는 법률 적용상 미비된 점이 많다고 본다. 특히, 축산물의 유해물질잔류 등 공중보건상 인체에 미치는 위해문제를 다루는데에는 더욱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건사회부 소관

보건부의 수입식품 규제법으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들을 들 수 있다. 즉, 동법 제16조(수입식품 등의 신고)를 비롯한 동법 제4조(판매 등 금지), 동법 제5조(병육 등의 판매금지), 동법 제7조(기준과 규격) 등의 관계조항과 수입식품 감시

요령 등의 실무규정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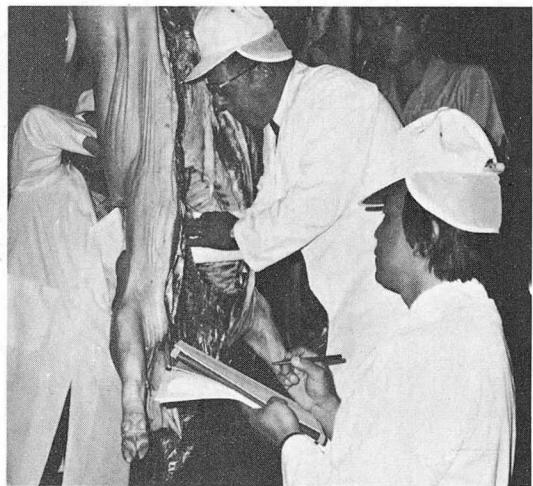
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 전반에 관한 것을 규정한 법규로서 축산물도 식품의 범주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얼마든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축산식품이란 특성과 특히 유해물질의 잔류 및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는 그 축산식품의 생산단계인 가축의 사육관리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축처리과정을 거쳐 저장·보관 및 수송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성있게 감시·감독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식품위생관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단계에서만 체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또한, 검사의 전문성으로 보아도 축산물의 위생관리 전과정을 다루지 않는 보사부소관(현재는 가공과정만 담당)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본다.

(2) 축산물 수입감시 및 검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수입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은 그 기능면으로 보아 동물검역소와 사람검역소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전기한 바와같이 농림수산부와 보사부의 관계법규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관사항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현 규정대로 한다면 양 부서에서 공히 수입축산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양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관부서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주관부서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축산물의 감시와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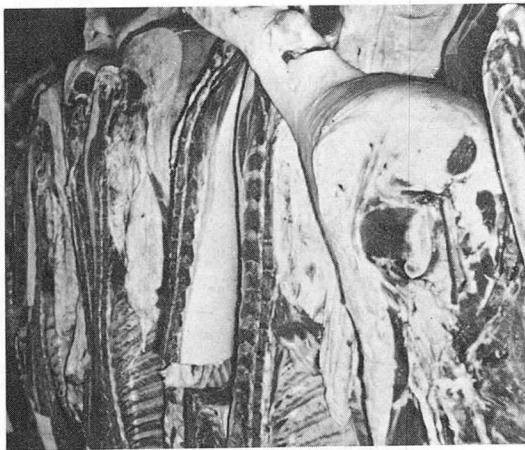
참고로 우리나라 양 검역소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농림수산부소관 검사기관으로 국립동물검역소 본소를 비롯하여 서울·인천·부산·군



산·제주 등 5개지소가 있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축을 비롯한 모든 축산물의 검역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축위생연구소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등 기술적인 지원과 연계검사를 하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부 소관 검사기관으로는 전국 주요 해·공항에 위치한 총 13개 사람검역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의 신고를 받아서류심사 및 관능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이화학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도 보건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분석을 실시하며, 보다 정밀한 검사를 국립보건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 및 검사에 대한 책임부서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 관계가 모호한 상태로 내려온 것이 현실인바, 근래 수입식품의 급속한 증가와 검사체계 강화에 대한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그 소관을 따지기에 이르고 우리나라식의 행정형태가 여기서도 노정되고 있다. 현재 양 부처에서 협의중에 있으므로 곧 그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요는 이러한 원칙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감시 및 검사체계가 조성되어 책임있는 관리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외국의 예를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일본의 경우는 후생성(보건사회부) 소관으로 전국 20개 해·공항 사람검역소에서 총 75명의 수입식품위생감시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연간 약 100만 톤의 축산물(식육류 및 그 가공제품)을 위시한 모든 수입식품의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입축산물은 미농림부(USDA)소관이고, 일반식품은 미보건사회부 소관으로 분담되어 관리하고 있다. 즉 수입축산물은 미농림부 산하 식품안전 및 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s, FSIS)의 국제협력국 수입감시과(3개 과)의 주관하에 연방식육검사법 및 가금육검사법에 따라 10여개국으로부터 약 24억파운드의 축산물(식육류 및 그 가공품) 수입에 대한 체크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담 감시요원만도 133명이 종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동물검역업무는 별도의 기관인 동식물검역청에서 취급하고 있다.(참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월간양돈지 금년 3월호 90쪽을 참고바람).

2. 수입축산물 위생관리대책

이상으로 우리나라 수입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현황을 개관하였는바, 수입축산물로 인한 사회적 인 물의를 진정시키고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수입과 공급을 위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몇가지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본고를 맺는다.

1) 수입축산물 위생관리 창구를 단일화하여 관리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것. 즉, 쇠고기 등 원료축산물과 축산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전담 취급하되,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기술 지원 할 것.

다만, 기타 농산식품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하여 그 업무보장 사항을 구분 할 것.

2)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수입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것이며, 구체적인 절차규정과 검사기준, 시험 방법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권위있는 행정규제를 마련할 것.

3) 전담관리요원을 증원·확보함과 동시에 기구조직도 감시지도부문과 시험검사부문으로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일반 검역 업무와 별도로 전담부서를 검역소내에 설치 운영 할 것.

4) 수입감시 및 검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분석기술과 분석기기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과단성 있는 예산지원 등 정책적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천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기술인력의 훈련교육을 강화할 것.

5) 국내외 정보관리의 강화와 체계화만이 수입식품 위생행정의 첨경임을 깊이 인식하여 수입상 대국은 물론 국제적인 사전정보 입수체계를 수립하고, 이들 정보를 시간적·공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분석 등 전산화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운영할 것. ■